

문서번호 마케팅본부 23-00224 호

(769-3251, 이현정)

발 신 2023.04.28.

수 신 수신처참조

참 조 수시공시담당 부서장

제 목 소규모펀드 임의해지 안내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19층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343, Samil-daero, Jung-gu,  
Seoul 04538, Korea

asset.daishin.com

1. 귀 사(행)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 조(투자신탁의 해지) 및 동법 시행령 제 223 조제 4 호에 의거 소규모펀드를 다음과 같이 해지하고자 통보하오니, 수시공시 및 고객안내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펀드의 소형화로 인해 현재의 펀드 규모로는 효율적인 운용에 제약이 발생함은 물론 소규모펀드의 장기화가 결국 고객님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임의해지를 결정하게 되었으니 넓은 양해바랍니다.

- 다 음 -

가.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처리방안

집합투자기구명칭	최초설정일	설정좌수 (2023/04/25)	처리방안
대신 삼성그룹코어알파 증권투자신탁[주식]	2020-12-23	2,550,576,013	임의해지

나. 임의해지사유 : 펀드 소형화로 인하여 최소 운용규모에 미달하는 소규모펀드 임의해지

다. 임의해지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 조(투자신탁의 해지) 제 1 항, 동법 시행령 제 223 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제 4 호에 의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임의해지하고자 함.

라. 해지일 : 2023 년 6 월 30 일(결산일: 2023 년 6 월 29 일)

마. 상환금 지급 방법 : 투자신탁 해지일(2023.06.30.) 당일 공시되는 상환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환대금이 해당 판매사를 통해 지급됩니다.

바. 해지관련 통보 :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수익자 개별 통지  
(수익자명부확정기준일 : 2023 년 5 월 15 일)

사. 비 고 : 해지통보에 따른 상기 펀드의 추가설정 및 신규 판매중단을 요청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첨 부 : 1. 소규모펀드 임의해지 대상 리스트 1 부.  
2. 투자신탁 해지 안내문 1 부. 끝.



대 신 자 산 운 용(주)

대표이사 진 승 옥

수신처 : 대신증권, 하나은행, 신탁업자 신한은행